

〈특집〉

## 『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성과와 경향 : 행정법 분야

崔桂暎\*

### I. 들어가며

행정법 분야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모두 99편이다. 본문에서는 대상 논문을 주제별로 행정법 일반(Ⅱ.), 행정법 총론(Ⅲ.), 행정법 각론(Ⅳ.), 행정구제법(Ⅴ.)의 4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영역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정도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행정법 일반’ 범주의 불명확성이다. 이와 같은 범주를 따로 마련하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법학』(이하에서는 『법학』이라고 줄인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교수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간되어 왔기 때문에, 학술대회 발표논문, 추도논문, 정년퇴임기념논문, 어느 한 나라의 특유한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판례회고 등 특정한 한 주제로 분류되기 어려운 글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여기에 속하는 논문들은 ‘행정법학의 과제’, ‘공익’, ‘특정한 한 국가의 행정법의 형성과정’ 등 총론, 각론, 구제법의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없는 글이 대부분이다.

둘째, 행정법 총론과 행정구제법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행정법 총론의 주요한 주제인 행정행위론, 개인적 공권론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와 겹쳐진다. 그러나 실제 분류를 해본 결과 “무허자재량행사청구권”(김동희, 1990)<sup>1)</sup> 정도가 바로 겹쳐지는 주제일 뿐 대체로는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의외로 행정행위론이나 개인적 공권론에 관한 논문이 많지 않고, 행정구제법 논문 중 상당수가 손해전보 분야의 논문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조교수.

1) 위 글의 경우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도구적 개념인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제법(원고적격)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숫자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위의 영역별 구분에 시기별 구분을 더한 것이다. 시기별 구분은 『법학』이 창간된 1959년을 기점으로 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였다.

구분	행정법 일반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각론	행정구제법	합 계
1960년대 (59-68)	1 (33.3)	1 (33.3)	0 (0)	1 (33.3)	3
1970년대 (69-78)	4 (25.0)	2 (12.5)	5 (31.3)	5 (31.3)	16
1980년대 (79-88)	9 (30.0)	9 (30.0)	7 (23.3)	5 (16.7)	30
1990년대 (89-98)	4 (18.1)	8 (36.4)	6 (27.3)	4 (18.1)	22
2000년대 (99-09)	9 (32.1)	7 (25.0)	6 (21.4)	6 (21.4)	28
합 계	27 (27.3)	27 (27.3)	24 (24.2)	21 (21.2)	99

\* 괄호 안은 같은 시기의 논문 중 해당 분야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임(%).

눈에 띄는 점은 논문들이 4개 영역에 큰 차이 없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법학의 연구경향 중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총론 분야의 연구에만 치중하고 각론 분야의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법학』에 실린 논문의 경우에는 총론으로의 쏠림 현상 없이 각론 분야의 연구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각론 분야 안에서도 행정조직법 3편, 경제행정법 5편, 토지행정법 8편, 건설행정법 3편, 교육행정법 3편, 사회보험법 2편으로(아래 IV. 참조),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시대별로 각 영역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의 총론 연구가, 전체 총론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27.3%)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적은 편(12.5%)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영역별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부터, 흔히들 짐작할 바와 같이 각론 분야의 연구가 최근에 비로소 활발해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래 전부터 『법학』에는 각론 분야의 글이 적지 않게 실려 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영역별로 해당 분야의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분류 안에

서는 가급적 시대순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 II. 행정법 일반

### 1. 법학연구소 개최 학술대회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행정법학 30년의 회고	김도창	1978
2	현대행정과 행정법학의 과제	서원우	1978
3	한국사회의 변화와 행정법학의 과제	김동희	1987
4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최송화	1995
5	법치주의의 현대적 전개와 전환기 행정법학의 과제	서원우	1997
6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 - 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법윤리적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	박정훈	1998
7	헌법과 행정법 -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	박정훈	1999
8	6·25 전시하의 행정법 - 전쟁과 법치주의 -	박정훈	2000

법학의 각 분야별로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의 과제를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법학연구소 주최로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있다. 행정법 분야의 발표로 『법학』에 실린 논문이, 1978년의 “행정법학 30년의 회고”(김도창)와 “현대행정과 행정법학의 과제”(서원우), 1987년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행정법학의 과제”(김동희), 1995년의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최송화)이다. 필자와 시대에 따라 강조점은 조금씩 다른데, 1970년대의 서원우 교수의 글에서는 사회국가원리, 행정의 사회관리기능, 행정과정론적 접근의 필요성 등이 강조된 반면, 1980년대의 김동희 교수의 글에서는 1세기 남짓한 역사를 가진 행정법의 특성상 기초이론의 확립과 기존체계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1990년대의 최송화 교수의 글에서는 한국적 문제의식에 근거한 한국 행정법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법정정책적 관점의 도입과 (사법준거적이 아닌) 행정준거적인 이론의 확립이 강조되었다. 또한 서원우 교수는 1997년 퇴임기념강연에서 다시 ‘법과 사실의 준별론’, ‘법관의 눈을 통한 행정현상의 파악’ 등 고전적인 법학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입법학·행정학 등 인접학문과 교류하고 법정정책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등 행정법학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법치주의의 현대적 전개와 전환기 행정법학의 과제”).

특정한 주제에 관한 법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법 논문이 발표된 바 있는데 그 성과물 또한 『법학』에 게재되었다. <사회병리와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1998년의 학술대회에서는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 - 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법윤리적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박정훈)이, <대한민국 헌정 50년>을 기념한 1999년의 학술대회에서는 “헌법과 행정법 -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박정훈, 1999)가, <6·25의 법적 조명>에서는 “6·25 전 시하의 행정법 - 전쟁과 법치주의 -”(박정훈, 2000)가 발표되었다.

## 2. 주도논문, 정년퇴임기념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한국 공법학과 목촌 김도창: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 개척자	성낙인	2006
2	서원우 교수와 한국의 행정법학	홍준형	2006
3	공익 개념의 범문제화: 행정법적 문제로서의 공익 <sup>2)</sup>	최송화	1999
4	공익의 범문제화	최송화	2006
5	프랑스 행정법상 공익개념	박균성	2006
6	영미에서의 공익개념과 공익의 범문제화	김유환	2006
7	경제규제와 공익	이원우	2006

추도논문도 두 차례에 걸쳐 실렸다. 김도창 교수의 1주기에는 “한국 공법학과 목촌 김도창: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 개척자”(성낙인, 2006)가, 서원우 교수의 1주기에는 “서원우 교수와 한국의 행정법학”(홍준형, 2006)이 각각 게재되었다.

최송화 교수는 범문제로서의 공익 개념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왔다[“공익 개념의 범문제화: 행정법적 문제로서의 공익”(최송화, 1999)]. 그리하여 그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여 발간된 제47권 제3호에는 <법에 있어서의 공익>을 주제로 한, “공익의 범문제화”(최송화, 2006), “프랑스 행정법상 공익개념”(박균성, 2006), “영미에서의 공익개념과 공익의 범문제화”(김유환, 2006), “경제규제와 공익”(이

2) 정년퇴임기념 논문은 아니지만 2006년의 퇴임기념 특집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논의의 편의상 여기에 분류하였다.

원우, 2006)이 게재되었다.

### 3. 비교법적 연구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nd its Rela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Larsen	1960
2	미국행정법의 장래	최송화	1980
3	월권소송론	김동희	1976
4	공역무론	김동희	1977
5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위원회	김동희	1980
6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제도의 적용기준	김동희	1983
7	프랑스 행정법상의 통치행위에 대한 고찰	김동희	1984
8	공역무제도에 관한 연구	김동희	1994

비교법적 주제를 다룬 글로써 III. 이하에서 논의할 특정한 주제에 속하지 않는 논문도 여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nd its Relation to Public Administration”(Larsen, 1960)는 영미에서 행정법 영역이 형성된 배경과 그 내용을 개관하는 글이다. 제2권 제1호에 실린 이 논문은 『법학』에 실린 최초의 행정법 논문이기도 하다. 최송화 교수는 “미국행정법의 장래”(최송화, 1980)에서 ‘앞으로의 100년 동안 미국에 있어서 사회적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미국의 행정법은 행정권의 비대화에 대응하여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사법심사 가능성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김동희 교수는 프랑스 행정법에 대한 지속적 탐구의 결과를 『법학』에 발표하였다. 공역무, 월권소송, 헌법위원회, 행정제도(공·사법 구별), 통치행위 등 프랑스에 특유한 제도에 관한 논문이 꾸준히 『법학』에 게재되었다[“월권소송론”(김동희, 1976), “공역무론”(김동희, 1977),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위원회”(김동희, 1980),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제도의 적용기준”(김동희, 1983), “프랑스 행정법상의 통치행위에 대한 고찰”(김동희, 1984), “공역무제도에 관한 연구”(김동희, 1994)]. 프랑스 행정법에 대한 김동희 교수의 연구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데 여기에게 소개하지 않은 논문은 아래에서 개별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 4. 판례회고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1980년도 행정법판례	최송화	1982
2	1981년도 행정법판례	최송화	1983
3	1982년도 행정법 판례( I )	최송화	1983
4	1982년도 행정법 판례( II )	최송화	1983

1980년대 초반 3년간에는 그 해에 나온 행정법 관련 판례를 회고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하였다[“1980년도 행정법판례”(최송화, 1982), “1981년도 행정법판례”(최송화, 1983), “1982년도 행정법 판례( I )( II )”(최송화, 1983)].

### III. 행정법 총론

#### 1. 法源論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미국 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 분석	김유환	1986
2	프랑스행정법에 있어서의 법의 일반원리	김동희	1987
3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관한 고찰	김동희	1989
4	프랑스 행정법상의 법의 일반원리	김동희	1996
5	유럽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Götz	1997
6	경제행정의 세계화 - 行政의 통제규범으로서 WTO협정? -	김태호	2005

“미국 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 분석”(김유환, 1986)은 미국의 비용-편익분석의 원용, 사법적 대응, 그리고 학설의 비판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동희 교수는 “프랑스행정법에 있어서의 법의 일반원리”(김동희, 1987),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관한 고찰”(김동희, 1989), “프랑스 행정법상의 법의 일반원리(김동희, 1996)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법상 일반원리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검토한 후 不文法源으로서의 條理의 자리매김을 시도하였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괴츠 교수는 “유럽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Götz, 1997)에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은 유럽법에서 성공적으로 관철되었으며 세계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법원칙으로서 적격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제행정의 세계화 - 行政의 통제규범으로서 WTO협정? -”(김태호, 2005)는 국제법이 행정을 규율하는 法源이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 논문이다. 이 글은 WTO 협정에 위반한 급식조례안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2005. 9. 7. 선고 2004추10 판결을 비판하면서 WTO 협정은 국내법원에 직접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주장을 펼치고 있다.

## 2. 행정입법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Rule-making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the United States	박윤훈	1973
2	규칙제정권에 대한 법적 통제 - 미국행정법의 이론동향을 중심으로 -	서원우	1981
3	프랑스의 행정입법제도에 관한 소고	김동희	1982
4	프랑스 행정법상의 재량준칙에 관한 고찰	김동희	1986
5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이론·판례의 검토 -	김동희	1991
6	규범구체화행정규칙	김동희	1999

“Rule-making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the United States”(박윤훈, 1973)은 미국 행정절차법상의 규칙제정절차와 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 영어 논문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도 행정입법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규칙제정권에 대한 법적 통제 - 미국행정법의 이론동향을 중심으로 -”(서원우, 1981)는 규칙제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 온 1970년대 미국 판례의 경향을 소개하면서 행정입법의 법적 통제를 위한 이론의 정립을 모색한 글이다. “프랑스의 행정입법제도에 관한 소고”(김동희, 1982)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명령(règlement), 법률명령(ordonnance)과 같은 프랑스 특유의 법률대위명령 제도를 상세히 소개한 글이다. 행정권에 독자적 입법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를, 행정입법도 越權訴訟에 의한 司法的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서 찾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행정규칙의 효력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행정법학계의 난제인데, 김동희 교수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 “프랑스 행정법상의 재량준칙에 관한 고찰”(김동희, 1986)에서는 재량준칙은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준법규적 효력을 갖는다는 프랑스의 학설·판례의 입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타당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현재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명시적으로 이러한 법리를 천명한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이론·판례의 검토 —”(김동희, 1991)에서는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조직규칙, 법규해석규칙, 재량준칙 등 행정규칙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판례상 인정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독일의 “규범구체화행정규칙”(김동희, 1999) 법리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임을 독일의 판례·학설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

### 3. 행정행위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英法上の 行政行爲論	윤세창	1963
2	우리나라 행정법상의 부당개념에 관한 고찰	김동희	1986
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김동희	1995
4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관념에 대한 일고	김동희	2005

“英法上の 行政行爲論”(윤세창, 1963)은 판결과 司法的 節次로부터 행정행위와 행정절차를 유추하여 구성하는 영국법의 사고방식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행위 개념이 대륙법계의 영향 하에 놓여 있지만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영국의 이론구성으로부터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상의 부당개념에 관한 고찰”(김동희, 1986)은 행정심판의 취소사유이자 행정청의 직권취소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행정행위의 부당개념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김동희 교수는 수익적 행정행위 경우에는 부당 개념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부당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김동희, 1995)은 행정법의 부관은 민법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측면을 갖는다는 시각을 기초로 하여, 부관의 관념·기능·종류·허용



성·취소소송가능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관념에 대한 일고”(김동희, 2005)는 당시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2004년 8월)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개정안의 중요한 준거자료가 된 프랑스의 행정행위 관념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행정입법도 개별처분과 마찬가지로 월권소송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됨을 지적하고 있고, 행정입법에 대한 재판통제의 가장 실질적인 심사척도로 기능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principes généraux du droit)에 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 4. 행정계약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프랑스행정법상의 행정계약	김동희	1980
2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	김동희	1991

독일 행정법 및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의 행정법에는 행정행위가 주된 행정작용 형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부터 행정계약이 중요한 행정작용수단으로 인정되어 이에 관한 법리가 오래 전부터 정립되어 왔다. 김동희 교수는 프랑스의 행정계약의 법리가 우리나라의 공법상 계약의 체계적 이론 정립에 있어 구체적 준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프랑스행정법상의 행정계약”(김동희, 1980)와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김동희, 1991)을 발표하였다. 위 논문들에서는 행정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 사법상 계약과 다른 어떠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계약자유원칙의 제한, 계약당사자평등원칙의 제한, 대공의 행위이론, 불가예견사태이론 등)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5.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미국의 행정절차법 개정 - 정보공개조항의 제정과 관련하여 -	서원우	1982
2	행정상의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	서원우	1986
3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	김동희	1996
4	행정재량의 절차적 통제	최송화	1998
5	Das Verhältnis zwischen Verwaltungsprozeßrecht und Verwaltungsverfahrensrecht	Würten- berger	2004
6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박정훈	2004

행정절차와 정보공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1996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학』에는 1980년대부터 이미 이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서원우 교수는 “미국의 행정절차법 개정 - 정보공개조항의 제정과 관련하여 -”(서원우, 1982)에서 1967년과 1974년에 각각 미국의 행정절차법이 비공개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보공개가 국민참가와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중요한 테마인 절차적 하자의 독립취소가능성 및 치유의 문제에 관해 다룬 논문도 두 편 게재되었다. “행정상의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서원우, 1986)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김동희, 1996)가 그것이다.

“행정재량의 절차적 통제”(최송화, 1998)는 종래 행정행위에 한정되었던 재량의 개념을 행정입법을 포함한 행정작용 전반으로 확대하여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재량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갖는 순기능과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각각의 행정작용별로 우리 행정절차법의 제도에 대한 분석에 비교법적 검토를 더하고 있다. 특히 위 논문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직후에 발표되었는바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후의 판례와 학설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이 논문에서는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처분에 거부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2003년 한 판결에서 마찬가지로 입장을 취하였다.

2002년에는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 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이 개최되었는데 행정법 분야의 주제는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관계였다. 그 결과물이 2004년에 실린 뷔르텐베르거(Würtenberger) 교수의 “Das Verhältnis zwischen Verwaltungsprozeß recht und Verwaltungsverfahrenrecht”(2004)와 박정훈 교수의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2004)이다.

## 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행정상 공표의 법적 문제	김원주	1978
2	협의를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	박정훈	2001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제문제	박정훈	2005

“행정상 공표의 법적 문제”(김원주, 1978)는 행정청이 공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당시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공표의 법적 근거, 행정절차, 법적 구제 수단 등의 문제를 다룬 논문이다. “협의를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박정훈, 2001)는 행정법 학계의 주된 관심 영역으로부터 비교적 떨어져 있었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허가사업의 제한 등)을 광의의 행정벌로 파악한 뒤 이에 대해서도 행정형벌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제문제”(박정훈, 2005)는 종래 처분성 위주로만 논의되었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문제를, 헌법적 문제(위임입법, 무죄추정원칙과 일사부재리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와 행정법적 문제(소의 이익, 심사척도와 심사강도)의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 IV. 행정법 각론

### 1. 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법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미국에 있어서의 독립규제위원회의 쟁송재결기능	이회창	1971
2	우리나라의 행정상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최송화	1972
3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적 보장	서원우	1994

행정조직 분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이 실렸다. 위원회는 통상의 행정조직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지위와 합의제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에 있어서의 독립규제위원회의 쟁송재결기능”(이회창, 1971)은 해외 파견 판·검사 귀국보고 특별호에 실린 글인데,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상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최송화, 1972)는 우리나라의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결정의 지연과 독립성의 결여로 진단하면서도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신속성과 신중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적 보장”(서원우, 1994)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전통적 시각이 행정주체와 사인의 이원적 대립, 행정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라는 이분론, 사인의 권리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행정구제제도의 법리를 전제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대적 분쟁에 대한 사법권의 새로운 임무와 주민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 2. 경제행정법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프랑스 행정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공공기업에 관한 소고	김동희	1992
2	공익사업의 특허	김동희	1993
3	통독 후 구동독 국영기업 등의 사유화와 공공재산의 귀속	김병기	1996
4	프랑스 공기업에 관한 연구	김동희	2002
5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허성욱	2008

김동희 교수는 경제행정법 분야의 기본 개념이면서도 학자들 사이에 개념과 범위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기업과 특허 개념에 관하여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프랑스의 법제(영조물법인, 공공기업, 공기업)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한 것이다. “프랑스 행정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공공기업에 관한 소고”(김동희, 1992), “공익사업의 특허”(김동희, 1993), “프랑스 공기업에 관한 연구”(김동희, 2002)가 이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특히 “공익사업의 특허”에서는 종래의 다수설인 공기업 특허론이 우리 실정법제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의 특허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독 후 구동독 국영기업 등의 사유화와 공공재산의 귀속”(김병기, 1996)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 동독의 국유재산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논점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북한 국가재산의 귀속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논문이다.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허성욱, 2008)은 경제규제의 실제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경제규제의 현실과 이론에 관한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보다 현실설명력 있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글이다.

### 3. 토지행정법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우리나라 토지행정법에 관한 연구	최송화	1975
2	계획제한과 사권보호	서원우	1976
3	토지소유제도의 재정립	서원우	1979
4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에 관한 연구	서원우	1980
5	미국법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규제(I)	서원우	1982
6	미국법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규제(II)	서원우	1983
7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상)	서원우 김상용	1987
8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하)	서원우 김상용	1987

“우리나라 토지행정법에 관한 연구”(최송화, 1975)는 토지행정법의 의의·범위·法例·성격·특색을 고찰하고, 계획행정으로서의 토지행정법이 행정절차와 관련해

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사법심사와 주민의 참가라는 문제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위 논문은 우리나라의 토지법사상의 정립을 향한 출발의 시도로서 ‘우리 민족의 土地와의 關係史’를 개관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원우 교수는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일련의 논문을 『법학』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은 토지소유권의 기초와 같은 이념적 문제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문제를 함께 아우르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권의 사회성을 강조하여 소유권을 절대시하는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수단을 완비하는 데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홍준형 교수는 서원우 행정법학의 차별성을 ‘사회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정정책학적 지향’에서 찾고 있는데, 그러한 지향이 구현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토지행정법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원우 교수와 한국의 행정법학”(홍준형, 2006)].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제한과 사권보호”(서원우, 1976)는 1972년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근거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계획제한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권보호의 문제를 실제법상의 권리보호와 절차법상의 권리보호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토지소유제도의 재정립”(서원우, 1979)에서는 토지소유제도의 법적 기초, 토지이용권, 소유형태,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시계획, 수용과 손실보상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에 관한 연구”(서원우, 1980)는 독일과 영국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당시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던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환수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으로 진단한 뒤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법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규제(I)(II)”(서원우, 1982·1983)는 손실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찰권에 의한 규제와 손실보상을 필요로 하는 공용수용권에 의한 규제를 구별하는 미국의 이론과 판례의 변천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상)(하) - 토지에 관한 사익과 공익의 조정을 중심으로 -”(서원우·김상용, 1987)는 민법학자인 김상용 교수와의 공동연구의 성과물로서 공법과 사법의 양측면에서 동시에 종합적으로 토지법을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소유·이용·수익·개발·정보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공·사익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개별 법제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4. 건설행정법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선진화를 위한 건설법제의 혁신 방안	홍준형	2006
2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	김중보	2007
3	재건축결의무효의 공법적 파장(波長)	김중보	2008

건설행정법 분야의 논문은 3편이다. “선진화를 위한 건설법제의 혁신 방안”(홍준형, 2006)는 법과 제도가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법제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논문이다. 범정책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법제혁신의 방향을 모색한 점이 다른 논문들과의 차별점을 이룬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김중보, 2007)은, 근래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공자 선정 제한 규정이 다른 법규정 및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형사책임의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고 시도한 논문이다. “재건축결의무효의 공법적 파장(波長)”(김중보, 2008)은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소송인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김중보 교수의 두 논문은 현재 건설 분야에서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다룬 현장감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교육행정법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대학에서의 학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원우	1990
2	학칙의 법적 성격과 국가감독	최송화	1996
3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익적 문제	박정훈	2006

교육행정법과 관련해서는 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대학에서의 학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서원우, 1990)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대학, 학생 3자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고 이성적인 관계로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대학자치와 학생자치의 관계, 학생에 대한 징계의 민주화, 학생참가 긍정론

과 비판론 등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현실적 논점들을 법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학칙의 법적 성격과 국가감독”(최송화, 1996)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칙의 자치규범성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학칙의 고유한 규율영역을 인정하여야 하며, 국가감독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익적 문제”(박정훈, 2006)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논의가 법인의 문제는 법적 형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6. 사회보험법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한국, 프랑스 및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의 비교고찰	김동희	1981
2	한국과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비교고찰	김동희	1985

또한 사회보험법 분야에서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고찰하는 김동희 교수의 논문이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 “한국, 프랑스 및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의 비교고찰”(김동희, 1981)과 “한국과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비교고찰”(김동희, 1985)이 그것이다.

## V. 행정구제법

### 1. 행정쟁송제도 일반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공공소송에 관한 연구(I)	서원우	1985
2	공공소송에 관한 연구(II)	서원우	1985
3	인류의 보편적 지체로서의 행정소송 - 다원적 법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현상과 발전방향, 재판관할과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	박정훈	2001
4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박정훈	2004



“공공소송에 관한 연구(I)(II)”(서원우, 1985)은 현대 사회에서 재판제도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정책형성적 기능과 공공적 이익의 보호로 변화하고 있음에 대응하여, 사법제도와 법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룬 논문이다. 이 논문은 원고적격의 확대, 집단소송과 같은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소송제도, 절차적 보장, 법관의 역할 변화 등 행정소송의 근본을 이루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에도 유의미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박정훈 교수는 다원적 법비교의 방법론을 기초로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현상과 개선방향을 정리한 후 해석론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확대를 시도한 일련의 논문을 『법학』지에 발표하였다.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 다원적 법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현상과 발전방향, 재판관할과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박정훈, 2001),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박정훈, 2004) 등이 그것이다. 2001년의 논문이 해석론적 차원의 시도인 반면, 2004년의 논문은 입법론의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한 글이다. 후자의 논문은 저자가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 2. 원고적격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반사적 이익과 법적이익	최송화	1969
2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최송화	1976
3	미국판례법상의 원고적격법리	서원우	1977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김동희	1990
5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 한일 양국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조홍식	2005
6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II) - 대법원의 객관소송관에 대한 분석적 비판을 중심으로 -	조홍식	2005

“반사적 이익과 법적이익”(최송화, 1969)은 독일과 일본의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이익과 구별되는 반사적 이익의 관념의 재구성을 시도한 논문이다. 같은 필자의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최송화, 1976)은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상세하게 분석한 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의 약점인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문제를 인정하면서 이를 객관화·명확화하는 것이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으로 발전시키는 전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관례법상의 원고적격법리”(서원우, 1977)은 미국에서의 원고적격 확대 과정, 특히 환경소송 분야에서의 확대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확대 추이는 행정절차에의 참가권의 확대와 표리를 이루는 것인데 이 점에서 우리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법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독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법리는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행정법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김동희 교수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김동희, 1990)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설 상황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토대로 이 법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원고적격의 확대를 위한 수단 또는 관계법규의 취지와 무관하게 재량하자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일부의 시각을 비판한 후, 이 이론의 존재의의를 ① 재량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② 다만 기속행위와는 달리 제한적인 절차적 공권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조홍식 교수의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 한일 양국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조홍식, 2005),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Ⅱ) — 대법원의 객관소송관에 대한 분석적 비판을 중심으로 —”(조홍식, 2005)은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2004년)에서 제안된 원고적격의 확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자의 논문에서는 대법원이 주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역학을 본인-대리인이론으로 분석하면서 대법원의 개정안이 입법부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주장하였다. 후자의 논문에서는 공공선택이론의 시각에서 법원은 의사결정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원고적격을 확장하면서 내건 ‘객관적 법질서의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 3. 소의 이익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	서원우	1996
2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헌법 - 사법권과 소의 이익,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의 함수관계 -	조홍식	2001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서원우, 1996)은 부령으로 가중요건이 정해진 경우 제재기간 경과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 14148 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있는 판례평석이다. 서원우 교수는 소의 이익은 가중요건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해졌는가,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졌는가와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불이익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위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헌법 - 사법권과 소의 이익,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의 함수관계 -”(조홍식, 2001)는 공장시설물이 철거된 이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배출시설취소처분은 그러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두 개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저자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이론(개인적 이해관계의 기준)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논증한 후, 이에 의할 때 배출시설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 4. 거부, 부작위에 대한 쟁송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행정청의 작위, 부작위를 요구하는 소송	김경재	1964
2	행정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쟁송제도	김동희	1992

의무이행소송 또는 이행소송의 도입 문제는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분야의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법학』에는 이미 1964년에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룬 논문이 실렸다. “행정청의 작위, 부작위를 요구하는 소송”(김경재)은 문제상황을 4가지 유형을 나누어 고찰

하였는데, 독일·일본뿐만 아니라 영미와 프랑스의 법제까지 다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행정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쟁송제도”(김동희, 1992)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재처분의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를 대신하는 효과를 갖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 5. 손실보상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공용수용제도의 이론적 전개	서원우	1973
2	공공용지취득의 효율적 방안	서원우 김동희	1980
3	행정상손실보상의 근거	김동희	1990

“공용수용제도의 이론적 전개”(서원우, 1973)는 18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공용수용법제가 어떤 이론적 기초 위에서 전개되어 왔는가를 개관함으로써 수용권의 본질, 손실보상 등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하였다. “공공용지취득의 효율적 방안”(1980)은 서원우·김동희 교수가 정부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물이다. 토지수용제도와 先買權제도(토지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당해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시주택부지, 녹지, 공단 등 당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던 공공용지의 수요에 대처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상손실보상의 근거”(김동희, 1990)는 손실보상의 근거를 이론적 근거와 법적 근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데, 후자에 관해 헌법 제23조 제3항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직접효력설을 지지하고 있다.

## 6. 국가배상

연번	제목	필자	발행년
1	한국과 불란서의 행정상손해배상제도의 비교고찰	김동희	1975
2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소고	김동희	1979
3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김동희	1985
4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관념	김동희	2002

김동희 교수는 19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와 한국의 국가배상제도를 비교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과 불란서의 행정상손해배상제도의 비교고찰”(김동희, 1975),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소고”(김동희, 1979),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김동희, 1985),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관념”(김동희, 2002)이 그것이다. 특히 1985년의 논문에서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에 관하여, 프랑스의 판례이론을 원용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하나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책임성이 부인된다는 새로운 이론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로 확립되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VI. 성과와 경향

개별 논문을 검토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각론 분야 논문의 비중이 적지 않고, 그러한 경향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비교적 오래 전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론 내에서도 어느 특정한 세부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논문이 넓은 분야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비교법적 고찰에 있어서도 행정법학계의 일반적인 연구경향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은 독일법의 강력한 영향 하에 놓여 있는 대표적 분야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학』에 실린 논문의 경우 독일만을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미국·영국·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법제가 등장하였고, 하나의 논문 안에서 여러 나라의 법제와의 다원적 비교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 행정법학계에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정한 세부 주제에 관하여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킨 논문이 상당수 있었다. 본교 소속의 교수가 재직기간 동안 관심 분야의 연구성과를 꾸준히 『법학』에 발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서원우 교수의 연구,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김동희 교수의 연구, 공익 개념에 관한 최송화 교수의 연구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50년에도 『법학』이 다양한 논의와 다양한 방법론으로 행정법학계를 풍요롭게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